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
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안경덕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재난 발생 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8182호, 2021. 5. 18., 공포, 11.19. 시행)됨에 따라,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최소비율, 국무총리의 위원장 권한 행사 및 실태조사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(안 제2조)

-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
-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
- 위원을 추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보

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

나. 국무총리의 권한행사(안 제5조)

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을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

다. 위원회의 운영 등(안 제6조)

1)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민간 전문가, 관계 기관장 등에 대한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
2) 안전 중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“중앙안전관리위원회”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

라.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
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, 중앙행정기관, 자치단체,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

마. 실태조사의 실시(안 제11조)

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와 종사자 실태를 조사하고,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바. 지원계획 및 이행 등의 평가(안 제12조)

1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에 알리고, 수행기관으로부터 성과목표 등을 제출받아 지원계획

및 그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

2)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수행기관장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부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.

④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를 말한다.
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,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국무총리의 권한행사) ①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,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법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법 제7조 각 호의 심의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는 실무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실무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
2.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필수업무종사자 보호·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제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·지원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
2.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3.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4.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제9조(수당)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실태조사의 세부사항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난 유형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에 관한 사항
2. 제1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관한 사항
3. 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및 정책 현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계획 및 이행 등의 평가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(이하 “이행평가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.

1.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의 적절성
2. 지원계획의 추진과제의 이행 실적
3. 지원계획의 이행 관련 교육 및 홍보 실태
4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수행기관장”이라 한다)에게 미리 알

려야 한다.

③ 수행기관장은 이행평가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후 15일 이내에 지원계획의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년도에 실시된 이행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수행기관장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3조(행정·재정적 지원 등)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527